

경운대학교 학생회임원승인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총학생회 임원, 대의원회 임원 및 동아리 회장(이하“학생회 임원”이라 한다)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준) 학생회 임원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행실이 바르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
2. 국장은 4학기(부장 3학기)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
3. 차장은 학년제한이 없으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15학점 이상을 수강중인 자
4. <삭제>
5.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징계대상에 회부되어 있지 않은 자

제3조(임기)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부서장) ① 학생회 임원 각 부서(차)장은 제 2조에 제시한 임원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과(부)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

② <삭제>

제5조(대의원회) 대의원회 임원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대의원회는 각 학부(과) 학회장들로 구성된다.
- ② 대의원회 임원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, 60학점이상을 이수한 자
- ③ 단, 임상실습, 현장실습, 비행실습 등 학부(과)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신설 또는 편제가 미완성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④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출신이외 학과 학회장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를 승인한다.<2020.03.01. 시행>

제6조(동아리) 동아리 회장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각 동아리(전공동아리 제외) 회장은 동아리자체에서 선발한다.
- ② 동아리 회장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동아리 연합회장은 동아리 회장 중 회장단 선거를 통하여 선발한다.
- ④ 동아리 회장은 특별히 학년의 기준을 두지 않는다. 단 1학년 제외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